영등포자이르네

영등포 자이르네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영등포자이르네의 견본주택 방문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함께 운영되는 홈페이지(ydp-xirene.com)를 통해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 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 사전 예약제 안내
  - 견본주택 방문 예약은 영등포자이르네 홈페이지(ydp-xirene.com) 방문예약 시스템을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일자별, 시간별 방문객수를 한정하여 유선예약 이후 예약 일자, 시간에 견본주택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입장 전, 관람 또는 상담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입장 시 손소독제, 감염 확산 예방 조치에 불응한 경우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나는 유증상자는 견본주택 방문이 불가합니다.
  - 열 화상카메라 및 비접촉 체온기를 통한 37.5도 이상일 경우(당 견본주택에서 확인 기준)
  - 입장 전 QR코드 전자 방명록 등록하지 않을 경우
  - 기타 견본주택 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시행위탁사가 고지한 기간 및 운영시간 외, 견본주택 방문이 불가합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 공급계약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대표전화(1811-9750)를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위해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모든 상담원이 상담 중으로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 본 건축물은 2020.04.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 본 건축물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건축과 - 19926호(2020.07.02)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 본 도시형생활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설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하나의 건축물로 함께 건축하는 경우로서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포함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2조 제1항 및 제59조에 의한 규정만을 적용 받으므로 입주자저축요건, 주택청약자격,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요건, 재당첨 제한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 본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제57조 등 규정에 의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 ■ 본 공동주택은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며,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청약신청 취소는 신청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은 1인 1건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동일인 2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 동 · 호수 및 당첨자는 시행위탁자에서 지정한 추첨 전문 업체의 프로그램을 통해 공정한 전산 추첨으로 결정되며, 예비당첨자는 공급세대수의 100%를 순번 추첨하여 선정합니다. 전체 청약신청자수가 200%를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를 모두 예비당첨자로 선정하고 미계약 발생 시 잔여물량을 공개하여 추첨의 방식으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동호수를 배정하며, 예비당첨자 순번은 잔여 동호수 추첨을 위한 순번입니다. 예비당첨자 계약 이후 미계약 발생시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합니다.
- ■ 본 공동주택은 정부에서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 ■ 본 공동주택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는 투기과열지구/과밀억제권역이며, 본 도시형생활주택은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에 의거 일반공급 주택의 경우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본 공동주택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3억 원 이상인 주택의 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취득을 위한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을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해야 하므로, 계약체결 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 거래대상 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 등을 기재하여야 함)를 사업 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주체로 미제출 시 수분양자가 직접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모두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견본주택에는 49B 주택형이 건립되어 있으며, 건립되지 않은 주택형은 단위세대 모형과 안내책자,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는 건축 관련 도면 등을 참고하시어 계약 전에 세대 내부,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청약 및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의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 시	2020년 7월 13일(월)~7월 14일(화) 2일간, 09:30~17:30	2020년 7월 15일(수) 14:00 이후	2020년 7월 16일(목)~7월 18일(토) 3일간, 10:00~16:00
방 법	영등포자이르네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모바일 신청 가능)	영등포자이르네 홈페이지 개별조회	견본주택 방문계약
장 소	• 당사 홈페이지 주소(ydp-xirene.com)	• 당사 홈페이지 주소(ydp-xirene.com)	영등포 자이르네 견본주택(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03-15,16번지)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건축과 - 19926호(2020.07.0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 공급위치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990-80번지
- ▣ 대지면적 : 6,118.00㎡, 건축면적 : 1,551.26㎡, 연면적 : 25,151.46㎡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22,594.29㎡ / 근린생활시설 1,893.36㎡ / 아동복지시설 663.81㎡]
- ▣ 공급규모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지하2층~지상20층 3개동 총 212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17호실(49A형 152세대, 49B형 20세대, 49C형 20세대, 49D형 20세대)
- ▣ 층별용도 : 지상1층~지상20층 공동주택, 지하1층~지상1층 근린생활시설
- ▣ 주차대수 : 총 주차대수 206대 [공동주택 189대, 근린생활시설 12대, 아동복지시설 5대]
- ▣ 입주예정일 : 2022년 11월 (정확한 입주 일자는 추후 통보 예정임.)
-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구분	주택형(주거전용 면적기준)	약식표기	공급세대수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당 대지지분	입주예정 시 기	발코니 유형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계약면적			
				전용면적	주거공용	공급면적						
민영주택	49.0100A	49A	152	49.0100	17.6500	66.6600	7.3400	32.3100	106.3100	25.8935	2022.11.	전세대 확장형
	49.4700B	49B	20	49.4700	18.4500	67.9200	7.4000	32.6300	107.9500	26.1365		
	49.1000C	49C	20	49.1000	18.0200	67.1200	7.3600	32.3800	106.8600	25.9410		
	49.0800D	49D	20	49.0800	18.1400	67.2200	7.3500	32.3700	106.9400	25.9305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착오가 없도록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계 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비율에 따라 배분(면적산출 근거에 의해 소수점 5자리에서 버림 처리)하였으며, 향후 입주시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음.
※ 각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면적은 소수점 2자리까지 표기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원, VAT 포함)

군별	주택형/동 · 호별	공급세대수	층별	세대당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1차	2차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대지비	건축비	합계	계약시	계약일로 30일 이내	20-11-17	21-02-17	21-05-17	21-08-17	22-04-18	22-08-17	입주지정일
1군	[49A] 101동 1~2호, 102동 4~5호	3	1F	203,930,000	344,540,000	548,470,000	10,000,000	44,847,000	54,847,000	54,847,000	54,847,000	54,847,000	54,847,000	54,847,000	164,541,000
		3	2F	203,930,000	356,090,000	560,020,000	10,000,000	46,002,000	56,002,000	56,002,000	56,002,000	56,002,000	56,002,000	56,002,000	168,006,000
		4	3F	203,930,000	361,870,000	565,800,000	10,000,000	46,580,000	56,580,000	56,580,000	56,580,000	56,580,000	56,580,000	56,580,000	169,740,000
		4	4F	203,930,000	367,640,000	571,570,000	10,000,000	47,157,000	57,157,000	57,157,000	57,157,000	57,157,000	57,157,000	57,157,000	171,471,000
		20	5~9F	203,930,000	373,410,000	577,340,000	10,000,000	47,734,000	57,734,000	57,734,000	57,734,000	57,734,000	57,734,000	57,734,000	173,202,000
		16	10~14F	203,930,000	379,190,000	583,120,000	10,000,000	48,312,000	58,312,000	58,312,000	58,312,000	58,312,000	58,312,000	58,312,000	174,936,000
		16	15~20F	203,930,000	382,070,000	586,000,000	10,000,000	48,600,000	58,600,000	58,600,000	58,600,000	58,600,000	58,600,000	58,600,000	175,800,000
	[49A] 101동 5~6호, 103동 1~2호	2	1F	203,930,000	341,820,000	545,750,000	10,000,000	44,575,000	54,575,000	54,575,000	54,575,000	54,575,000	54,575,000	54,575,000	163,725,000
		2	2F	203,930,000	353,310,000	557,240,000	10,000,000	45,724,000	55,724,000	55,724,000	55,724,000	55,724,000	55,724,000	55,724,000	167,172,000
		4	3F	203,930,000	359,050,000	562,980,000	10,000,000	46,298,000	56,298,000	56,298,000	56,298,000	56,298,000	56,298,000	56,298,000	168,894,000
		4	4F	203,930,000	364,800,000	568,730,000	10,000,000	46,873,000	56,873,000	56,873,000	56,873,000	56,873,000	56,873,000	56,873,000	170,619,000
		20	5~9F	203,930,000	370,540,000	574,470,000	10,000,000	47,447,000	57,447,000	57,447,000	57,447,000	57,447,000	57,447,000	57,447,000	172,341,000
		16	10~14F	203,930,000	376,280,000	580,210,000	10,000,000	48,021,000	58,021,000	58,021,000	58,021,000	58,021,000	58,021,000	58,021,000	174,063,000
		12	15~20F	203,930,000	379,160,000	583,090,000	10,000,000	48,309,000	58,309,000	58,309,000	58,309,000	58,309,000	58,309,000	58,309,000	174,927,000
	[49A] 102동 1~2호	2	1F	203,930,000	330,900,000	534,830,000	10,000,000	43,483,000	53,483,000	53,483,000	53,483,000	53,483,000	53,483,000	53,483,000	160,449,000
		2	2F	203,930,000	342,160,000	546,090,000	10,000,000	44,609,000	54,609,000	54,609,000	54,609,000	54,609,000	54,609,000	54,609,000	163,827,000
		2	3F	203,930,000	347,790,000	551,720,000	10,000,000	45,172,000	55,172,000	55,172,000	55,172,000	55,172,000	55,172,000	55,172,000	165,516,000
		2	4F	203,930,000	353,420,000	557,350,000	10,000,000	45,735,000	55,735,000	55,735,000	55,735,000	55,735,000	55,735,000	55,735,000	167,205,000
		10	5~9F	203,930,000	359,050,000	562,980,000	10,000,000	46,298,000	56,298,000	56,298,000	56,298,000	56,298,000	56,298,000	56,298,000	168,894,000
		8	10~13F	203,930,000	364,680,000	568,610,000	10,000,000	46,861,000	56,861,000	56,861,000	56,861,000	56,861,000	56,861,000	56,861,000	170,583,000
	[49B] 101동 3호	1	1F	205,843,000	355,727,000	561,570,000	10,000,000	46,157,000	56,157,000	56,157,000	56,157,000	56,157,000	56,157,000	56,157,000	168,471,000
		1	2F	205,843,000	367,547,000	573,390,000	10,000,000	47,339,000	57,339,000	57,339,000	57,339,000	57,339,000	57,339,000	57,339,000	172,017,000
		1	3F	205,843,000	373,457,000	579,300,000	10,000,000	47,930,000	57,930,000	57,930,000	57,930,000	57,930,000	57,930,000	57,930,000	173,790,000
		1	4F	205,843,000	379,367,000	585,210,000	10,000,000	48,521,000	58,521,000	58,521,000	58,521,000	58,521,000	58,521,000	58,521,000	175,563,000
		5	5~9F	205,843,000	385,277,000	591,120,000	10,000,000	49,112,000	59,112,000	59,112,000	59,112,000	59,112,000	59,112,000	59,112,000	177,336,000
		5	10~14F	205,843,000	391,187,000	597,030,000	10,000,000	49,703,000	59,703,000	59,703,000	59,703,000	59,703,000	59,703,000	59,703,000	179,109,000
		6	15~20F	205,843,000	394,147,000	599,990,000	10,000,000	49,999,000	59,999,000	59,999,000	59,999,000	59,999,000	59,999,000	59,999,000	179,997,000
	[49C] 101동 4호	1	1F	204,304,000	347,956,000	552,260,000	10,000,000	45,226,000	55,226,000	55,226,000	55,226,000	55,226,000	55,226,000	55,226,000	165,678,000
		1	2F	204,304,000	359,586,000	563,890,000	10,000,000	46,389,000	56,389,000	56,389,000	56,389,000	56,389,000	56,389,000	56,389,000	169,167,000
		1	3F	204,304,000	365,396,000	569,700,000	10,000,000	46,970,000	56,970,000	56,970,000	56,970,000	56,970,000	56,970,000	56,970,000	170,910,000
		1	4F	204,304,000	371,216,000	575,520,000	10,000,000	47,552,000	57,552,000	57,552,000	57,552,000	57,552,000	57,552,000	57,552,000	172,656,000
		5	5~9F	204,304,000	377,026,000	581,330,000	10,000,000	48,133,000	58,133,000	58,133,000	58,133,000	58,133,000	58,133,000	58,133,000	174,399,000
		5	10~14F	204,304,000	382,836,000	587,140,000	10,000,000	48,714,000	58,714,000	58,714,000	58,714,000	58,714,000	58,714,000	58,714,000	176,142,000
		6	15~20F	204,304,000	385,746,000	590,050,000	10,000,000	49,005,000	59,005,000	59,005,000	59,005,000	59,005,000	59,005,000	59,005,000	177,015,000
	[49D] 102동 3호	1	1F	204,221,000	348,729,000	552,950,000	10,000,000	45,295,000	55,295,000	55,295,000	55,295,000	55,295,000	55,295,000	55,295,000	165,885,000
		1	2F	204,221,000	360,369,000	564,590,000	10,000,000	46,459,000	56,459,000	56,459,000	56,459,000	56,459,000	56,459,000	56,459,000	169,377,000
		1	3F	204,221,000	366,189,000	570,410,000	10,000,000	47,041,000	57,041,000	57,041,000	57,041,000	57,041,000	57,041,000	57,041,000	171,123,000
		1	4F	204,221,000	372,009,000	576,230,000	10,000,000	47,623,000	57,623,000	57,623,000	57,623,000	57,623,000	57,623,000	57,623,000	172,869,000
		5	5~9F	204,221,000	377,829,000	582,050,000	10,000,000	48,205,000	58,205,000	58,205,000	58,205,000	58,205,000	58,205,000	58,205,000	174,615,000
		5	10~14F	204,221,000	383,649,000	587,870,000	10,000,000	48,787,000	58,787,000	58,787,000	58,787,000	58,787,000	58,787,000	58,787,000	176,361,000
		6	15~20F	204,221,000	386,559,000	590,780,000	10,000,000	49,078,000	59,078,000	59,078,000	59,078,000	59,078,000	59,078,000	59,078,000	177,234,000

■ 공통사항
- 상기 공급금액에는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추가선택품목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써 상기 공급대금은 사업주체 자체심의 결과 주택형별, 층별, 향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본 공동주택은 정부에서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동주택의 발코니확장 공사는 무상 제공됩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모든 주택형은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되었고 이에 따라 본 주택의 발코니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분양되며, 전세대 발코니확장을 일괄 시공하여 공급하므로 계약자는 개별적으로 발코니 미확장을 선택할 수 없사오니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사업주체에 대하여 발코니 미확장 또는 발코니 미확장에 따른 공사비 상당금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전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진입통로, 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소방의 피난 등에 필요한 전체층의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은 근린생활시설 등과 함께 전체 공용으로 하며, 각 호별로 지하주차장 및 건축 설비실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건물의 계약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합니다. 단, 단순착오에 의한 면적 정정이나, 소수점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은 지정된 시점에 납부해야 하며,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중도금 납부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각 라인별 최하층 및 최고층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동호수배치도를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외관 색채 및 패턴, 부대시설 등의 기타시설은 경관심의 재심의 등을 통해 색상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는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아동복지시설(영등포구청 기부채납) • 단,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과 법인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Ⅱ 청약신청 및 유의사항

■ 청약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03) 현재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
-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은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타입별 선택하여 청약 불가)이 가능합니다. 2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청약신청은 영등포자이르네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청약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시행위탁자에서 지정한 추첨 전문 업체의 프로그램을 통해 공정한 전산 추첨으로 당첨자 및 동 · 호수 무작위 추첨하여 결정됩니다.
- 예비당첨자는 공급세대수의 100%를 순번 추첨하여 선정하며, 당첨자 계약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합니다.

■ 청약일정

구 분	청약신청 및 청약금 납부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당첨자선정 및 동 · 호수 결정방법
일 시	2020년 7월 13일(월)~7월 14일(화) 2일간, 09:30~17:30	2020년 7월 15일(수) 14:00 이후	2020년 7월 16일(목)~7월 18일(토) 3일간, 10:00~16:00	추첨 전문 업체의 전산 프로그램 추첨에 의해 무작위 결정
장 소	•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 (ydp-xirene.com)	• 홈페이지 개별조회 (ydp-xirene.com)	영등포자이르네 견본주택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03-15번지)	

※ 청약신청자의 과밀 또는 인터넷 청약사이트 전산 장애 등 사유로 청약신청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영등포자이르네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안내 드리겠습니다.

■ 청약신청 안내

구 분	내 용
이용안내	• 청약신청일에 본인명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영등포자이르네 홈페이지 내 청약센터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인증절차를 위하여 필히 본인명의 휴대폰을 소지셔야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취약 계층을 위해 대표번호(1811-9750)를 통해 안내 받으시거나, 견본주택 비치된 컴퓨터로 인터넷 청약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견본주택 방문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및 절차	• 영등포자이르네 홈페이지 청약신청 안내 ① 인터넷 청약 방법 영등포자이르네 홈페이지(ydp-xirene.com)접속 → 청약센터 메뉴선택 → 인터넷 청약 → 청약접수 메뉴선택 → 약관동의 및 유의사항 확인 → 본인 확인용 본인인증(본인인증 정보 입력, 인증번호 수신 및 입력) → 청약신청서 작성(개인정보, 환불계좌 등록) → 청약신청 정보 확인 → 청약신청서 작성 완료(청약접수증 확인) → 가상계좌 확인 및 청약금 입금(지정된 가상계좌로 입금) → 최종 청약완료(홈페이지 접속 본인인증 후 청약완료 확인) ② 모바일 청약 방법(상기 인터넷청약과 동일 합니다.)

※ 반드시 지정된 가상 계좌로 청약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최종 청약 접수를 완료하였더라도 청약금 미입금 시 청약의 효력은 상실되오니 이점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은 인터넷 청약 불가하며, 아래서류 구비하여 견본주택 방문하여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법인 구비서류 : 청약신청서(견본주택에 비치),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 1통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사본(청약신청 법인명의) 1통, 법인 대표이사 및 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 청약신청금은 인터넷 청약신청자에 한하여 지정된 가상계좌로 은행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랍니다.(견본주택에서 현금 수납은 불가합니다.)
- 청약신청자와 청약신청금 납부인 및 청약금 환불계좌 예금주는 반드시 동일하여야 합니다.

구 분	청약신청금	금융기관명	청약신청금 납부 계좌번호	예금주
공통	3,000,000원 (금 삼백만원)	전북은행	청약시 지정받은 가상계좌	㈜무궁화신탁

※ 청약시 지정받은 가상계좌는 모계좌(전북은행 1013-01-3241734 ㈜무궁화신탁)로 이체관리됨.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견본주택에서 인터넷 취약 계층, 법인 외에는 청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 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격 및 신청건수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으며,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주체와 계약체결 시 중복 당첨을 모두 무효처리하오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신청자의 착오 및 중복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 되지않고 전액 환불됩니다. 청약금환불은 청약신청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합니다. (단, 청약접수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사업주체가 임의 분양합니다.
- 본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 제64조에 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이 경우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5년)]까지 분양 받는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의 전매를(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주택법" 제65의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1조 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예비당첨자 선정
- 예비당첨자는 공급세대수의 100%를 순번 추첨하여 선정합니다. 전체 청약신청자수가 200%를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를 모두 예비당첨자로 선정하고 미계약 발생시 잔여물량을 공개하여 추첨의 방식으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동호수를 배정하며, 예비 순번은 잔여 동호수 추첨을 위한 순번입니다.
- 예비당첨자가 수분양자로 선정된 즉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없이 임의 분양합니다.
- 잔여물량이 없는 경우는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소집 통보 시 정해진 시간까지 견본주택에 예비당첨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 예비당첨자 계약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방식으로 수의계약으로 공급합니다.
- 예비당첨자는 정당계약기간 종료 이후 잔여물량 발생 시 별도 통보(SMS 발송)할 예정이며, 예비당첨자 선정 시 연락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인해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인 1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예비당첨자 선정 전까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리 참석 시 구비서류 :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견본주택 비치), 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표등본 1부(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예비당첨자 및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 당첨자 안내사항

당첨자 계약기간 준수	• 반드시 지정된 당첨자 계약기간 내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 납부완료 및 계약 구비사항을 준비 후 계약장소를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 •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관련법령에 의거 잔여 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장소, 미방문,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부정당첨 유의사항	•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할 수 있으며, 위약금을 공제함.(또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기타사항	• 예비당첨자는 공급세대수의 100% 순번 추첨하여 선정하며, 미계약 세대 발생시 사업주체가 수의계약으로 공급함 • 당첨자가 지정된 계약체결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청약신청금 환불 안내

환불 일정	환불 안내
2020년 7월 28일(화) 이후	청약신청 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청약금 환불

※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 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Ⅲ 계약일정 및 유의사항

■ 계약기간 및 장소

계약체결 기간	계약체결 시간	장 소	계약금 납부
2020년 7월 16일(목)~7월 18일(토), 3일간	10:00~16:00	영등포자이르네 견본주택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03-15번지)	공급(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

※ 아래 공급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 및 공급(분양) 금액 납부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전북은행	1013-01-3241693	㈜무궁화신탁	무통장 입금 시 동 · 호수 8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102동 1001호" 당첨자 "홍길동" → 01021001홍길동)

※ 상기 납부계좌는 공급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서 1차 계약금만 입금하여야 하며, 2차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상기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세대별 계약서에 가상계좌 고지)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해당 지정일에 상기 납부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당첨된 동호수를 필히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위 청약신청금 환불 내용을 숙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 관계법령에 의거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시행위탁자가 규정한 일정기간(최대 30영업일)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 등 분양대금 납부는 시행수탁자 ㈜무궁화신탁과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무궁화신탁 계좌로 분양대금을 수납(자금관리) 합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계약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및 인감도장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1부(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홈페이지 (ydp-xirene.com) 게시 예정)
법인 계약시	• 법인인감증명서 1통 및 법인인감(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표이사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1부(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1부(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사업자등록증 1부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홈페이지 (ydp-xirene.com) 게시 예정) ※ 직원 및 대리인 신청 시 아래의 대리 신청 시의 추가 서류 구비하여야 함.
제3자 대리인 계약시 추가 구비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견본주택에 양식비치)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부동산 계약 위임용) • 계약자의 인감도장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인장 • 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홈페이지 (ydp-xirene.com) 게시 예정)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청약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시 유의사항
- 당첨된 동 · 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입금시 계약 동 · 호수 8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 102동 1001호 당첨자 홍길동 ⇒ 01021001홍길동)
- 공급대금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계좌오류 및 착오 입금 등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주체는 공급대금(2차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기일,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공동주택의 배치구조 및 향, 층 호수별 위치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등 침해될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이와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분양홍보관,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공급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별도의 통보없이 임의 분양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 할 수 없으며, 이로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계약자의 사정으로 부득이 해약하게 되는 경우(공급금액의 연체, 계약 부정행위 적발 등) 분양계약서 계약조항에 따라 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을 공제하여야 계약 해제가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중도금 납부 전에 한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절취, 청약/계약 관련 서류 변조,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합니다.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게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기 청약자격 전산수록한 자 중 주민등록사항(생년월일) 등의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록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은 본 사업을 위하여 진행된 토지비, 공사비 등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이와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사기간내 본 건축물의 구조개선등을 위하여 임의의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공급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설계변경에 관해서는 사업주체에게 위임한다.) •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분양대금을 직접 납부(이 경우 사업주체는 중도금 납부를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음)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3억 원 이상인 주택의 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취득을 위한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을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해야 하므로, 계약체결 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 거래대상 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 등을 기재하여야 함)를 사업 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체로 미제출 시 수분양자가 직접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모두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안내
- 대출기관 : 추후 별도 공지 예정
- 본 공동주택의 중도금 대출은 분양대금의 최대 40% 이내 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 조건입니다.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이며, 최초 중도금대출이자 발생일부터 입주 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중도금 대출이자는 시행 위탁자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시행 위탁자가 대납한 이자총액을 입주 전 사업주체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 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연 납부시(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사업주체가 산정한 연체료율을 적용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사업주체 등은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불가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중하게 청약,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계약자에 한하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정부의 관련정책(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개인의 사정(신용불량 거래자, 개인의 대출 유무, 분양권 소유여부 등) 및 대출취급기관의 방침(개인별 또는 세대별 제한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청약,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대출취급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또한, 중도금대출 실행 이후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의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는 경우 포함)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을 계약자 본인의 자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분양대금 미납부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및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대출 신청 시 중도금 대출의 안정성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중도금 대출 보증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보증수수료 및 제반비용(인지대 등)을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대출실행 이전에 계약자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공급대금을 계약자의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납부 유예 및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 불가시 중도금 이자후불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사업주체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특수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의 입주 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어질 경우에도 대출용 자금에 대한 이자는 변경된 입주 지정일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 지정일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직접 납부합니다. • 계약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타 대출취급기관의 담보대출로 대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대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대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협약에 의거 계약자 개인정보, 계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대출취급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알선에 의하여 중도금을 납부한 계약자가 소유권 보존등기 후 2개월이 경과하여도 소유권 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재외동포 및 외국인, 법인인 경우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계약자의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 사용 승인전 분양받은 자는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준공 및 입주예정일 : 2022년11월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전쟁, 내란,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 파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는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납부 하여야 합니다.
- 각 세대별 인테리어 공사는 입주 지정개시일 이후 잔금 완납 후에 가능합니다. • 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입실을 하지 아니하여 계약자에게 발생하는 손해 및 하자(동파, 결로, 분실, 도난, 파손 등)는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회사에서 선수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시행위탁자와 시공사는 수분양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지 등을 말함)를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민 · 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Ⅳ 추가 선택품목 안내

■ 가전 옵션 선택품목(유상 옵션)

(1)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VAT포함)

주택형(㎡)	선택안		설치장소	금액	비고
49A/B/C/D	선택1	2대	거실1, 침실1	3,280,000	
	선택2	3대	거실1, 침실1, 거실2	4,480,000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타입별 시스템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주택형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우물천정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의 출시,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당초 계약모델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질이상의 타 모델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2) 주방가전제품

(단위 : 원/VAT 포함)

품목	업체명	모델명	금액	비고
빌트인 냉장고	LG전자	S711SI24B	5,750,000	
		S691SI34BS2	7,650,000	

※ 주방가전제품 옵션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시스클라인(환기형 공기청정시스템)

(단위 : 원/VAT 포함)

품목	제조사	선택대수	설치 장소	공급금액	비고
시스클라인	자이S&D(주)	1	침실	875,000	

- 타입별 시스클라인 주방 1대는 기본(무상) 제공됩니다. • 시스클라인은 선택 옵션에 따라 세대 내 공기청정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스클라인은 한국공기청정협회(CA) 지정한 소음 기준에 부합하나, 개인별 소음 인지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클라인은 천장에 빌트인 형태로 설치되는 제품으로 천장에 설치되는 기타 장애물(스프링쿨러, 감지기 등)을 고려하여 실시공시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 선택시 시스클라인 컨트롤러(난방 기능 포함)는 난방 컨트롤러 위치에 매립형으로 시공됩니다.
- 공기청정시스템(주방 기본1대 외 추가시)의 추가 계약금액은 공동주택 공급대금(분양대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구입의사가 있는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 이후(또는 공동주택 공급계약시) 선택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 가전 옵션 선택 품목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냉장고, 시스클라인	납부계좌, 납부일정 및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추가 선택품목 공통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 1항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계약자는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판매 · 진행되며, 계약일정, 계약내용, 납부방법, 납부계좌, 계약주체 및 제품관련 사항 등은 추후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통보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시공상의 일정관계로 일정시점(계약자에게 별도 통지예정)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공급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공동주택 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유상옵션은 계약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중도금 납부 또는 자재발주 이후에는 유상옵션 공급주체 및 시공사의 동의 없이 계약 해제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공동주택 공급계약의 부수되는 마감공사로서 소요자재를 선 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계약 이후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시 원상복구, 변경공사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급주체 및 시공사의 동의 없이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합니다. (단, 수분양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 할 경우 사업주체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 유상옵션 선택품목계약은 본 공동주택 계약 해제사유와 동일하며, 본 공동주택 공급계약이 해제 되는 경우 함께 해제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 유상옵션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됩니다. 단,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 포함)후에는 사업주체는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된 손실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시행위탁자의 귀책으로 추가 선택품목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시행위탁자는 수분양자에게 총 옵션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계약 대금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소비자 상대업종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시장상황의 변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카달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달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일부 품목이 전시되오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본 공동주택의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Ⅴ 유의사항

■ 기타 유의사항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평형 환산법 = 형별면적(㎡)×0.3025
- 본 공동주택의 공급대금은 타입, 면적, 층, 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가격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계약체결 이후 계약자의 사정으로 부득이 해약하게 되는 경우(공급금액의 연체, 계약 부정행위 적발 등) 분양계약서 계약조항에 따라 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을 공제하여야 계약 해제가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중도금 납부 전에 한함)
- 본 공동주택의 공사 중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관계법령, 행정관청의 규제 및 지침, 지적정리, 확정측량, 소수점이하 단수정리 등 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 범위 이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분양당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별도의 이자 계산없이 소유권이전 등기시에 상호 정산합니다. 또한 단순착오에 의한 면적 정정이나,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 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도로, 진입로, 일조,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본 공동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입주 3일 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본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며 층간소음 ·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근의 신설 · 확장 도로는 인 · 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전실 및 홀 등 주거공용부분을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이면서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과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적인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 · 외부 파손 및 훼손 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본 공동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 · 민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본 공동주택은 개별난방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 본 공동주택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 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주민공동시설, D/A(설비 환기구), 쓰레기 분리수거장, 실외기, 상가, 관리실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 · 조망권 · 환경권 · 소음피해 ·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 등의 지상구조물 및 환기그릴에 의해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할 수 있고 소음과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조명, 주차장 진 · 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차량접근이 동별, 라인별로 제한될 수 있으며,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 단지 내 · 외부, 각 세대, 설계 등의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근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일부 구역밖 기반시설의 설치 주체 및 비용부담 주체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 확정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 면적(지분) 및 기반시설 설치면적이 증감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공용시설(E/V,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 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커뮤니티 운영 및 관리주체는 입주자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시공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물 사인물, 소방관련 시설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조경식재, 야간조명 및 경관조명, 측면 로고설치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의 관리에 따른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르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물,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 비용 등)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공용부(기계실, 주차장, 공용복도, 정화조 등)에 대한 운영, 유지관리비는 기계, 전기 시스템 및 관리주체에 따라 각각 다르게 부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불리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입주자)는 본 계약 외 발코니 확장 부위에 개인적으로 시공 · 설치한 바닥단열 및 마감재, 새시 등의 제반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서비스면적은 변경될 수 있으며, 타입별로 서비스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같은 타입이라 하더라도 면적에 차이가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전세대 하이브리드 쿡탑이 기본 설치 되며, 가스 쿡탑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배관 시공 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본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공동주택 용도의 주차장을 포함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등 전체 시설의 용도로 206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도장, 타일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은 법적인 단열기준에 따라 설계, 시공됩니다. 발코니 확장부위는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확장시의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일부 타입의 단위세대 전용면적에는 발코니 초과면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욕실천장에 배관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 되며, 점검구의 위치 및 개소, 크기는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로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설비배관 구성에 따라 거실 우물천장의 크기 및 형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사용성을 고려하여 가구 및 창호의 시공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현관은 출입시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의 배수구 등 설비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부 일반, 주방가구 및 거울, 욕실장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뒤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신발장, 주방가구, 세면대 하부에는 열전달로 인한 뒤틀림, 변형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방배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내 문 및 창의 위치 및 크기는 시공과정에서 이동,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탑지붕,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 난간, 경관조명)등의 디자인 및 장식물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 외벽면에 장식등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분전반은 현관에서 가장 가까운 침실 출입문 뒤편에 설치되며, 통신단자함은 현관 창고장 내부에 설치됩니다. 단자함, 조명기구,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 분전반, 통신단자함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된 모든 창호의 크기 및 위치, 하부턱 높이, 난간대 디자인 및 높이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골조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 깊이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되어 시공되어질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한 색상과 무늬가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주방가구, 일반가구 규격 및 배치불만, 전자제품 사용 불편 등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치 평면 및 가구류에 대해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등을 입주자 개인의 기호에 맞게 변경할 수 없으며 내부 시설물의 변경 필요시 준공 및 시설물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함.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창호 사이즈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비상시 외부피난시설(침실안방 창호)을 통하여 외부로 탈출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인해 시야간섭 및 미관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공동주택은 소방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이 되며,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입주 후 입주자의 부담으로 운영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동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조명, 주차장 진출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저층부는 석재 및 뿜칠, 페인트로 마감되며, 주동형태에 따라 석재와 뿜칠, 페인트의 적용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 할 수 있고,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경관계획(102동측벽특화)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상가 및 아동복지시설에 개별적으로 설치되는 냉난방관련 시설이 3동 주변 및 3층옥상에 설치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시야간섭,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소방법에 의한 세대 스프링클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커튼박스의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천장에 노출 설치된 환기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 침실내로 전달 될 수있으며, 각 실내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환기장치의 전열교환소자 및 필터는 사용빈도에 따라 교체주기가 다를 수 있고 입주자가 부담하여 교체하여야 합니다. • 세대의 가스계량기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샤워실/WC 천장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그 위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주방싱크대 상부에 렌지후드 배기덕트가 노출될 수 있고, 천장에는 점검구가 설치 될 수 있으며 그 위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민운동시설,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D/A (설비 환기구) 등의 위치, 개소, 형태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배수구 및 환기 디퓨져 등의 설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휀룸, 급배기구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 · 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며 저층세대의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저층세대는 단지 내 보도, 쓰레기집적소, 자전거보관소, DA,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의 설치로 인하여 소음, 분진,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 단지 내 건립되는 보도 · 조경 · 주차장 등의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타사 또는 당사 분양공동주택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공동주택을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공동주택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공동주택의 구조개선 및 입면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 · 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 · 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 · 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모형,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레벨극복을 위해 대지경계 및 단지내에 설치하는 구조물 (콘크리트옹벽, 조경석 등)은 현장여건 및 시공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 등 단지조경 및 디자인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기관 주도의 계획에 의한 주변 개발 계획은 관련 인허가 기관 주관사항으로 당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모형, 조감도 등에 표현된 단지 외부 횡단보도, 보도, 점자블럭 등의 사항은 본 시공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견본주택/홍보물 관련 사항
- 견본주택에는 일부 설계변경 예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으며, 관련내용에 대한 설계변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는 49B 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타입은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형태(일부 유상 또는 무상), 수납공간, 실면적 등 견본주택에 전시된 타입과 다르게 시공되는 부분(마감자재 , 제공품목 및 가구 디자인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에 제시된 외관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향후 실시설계 시 유효 동선 확보, 설비배관 공간 확보,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 및 연출용 시공부분(외부조경 및 외부마감 포함) 또는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홍보물 및 조감도, 투시도, 사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는 상이할 수 있으며,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벽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포장, 단지 내 시설물의 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 또는 심의결과,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의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세대 CG,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 등에 표현된 가구, 소품, 운동기구, 전시 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모형의 조경, 차 보도선형, 위치, 거리, 폭,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시 설계 후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전시된 세대의 외부벽체 및 외부 바닥마감, 조경 및 시설물 등은 견본주택 전시용으로 시공되었으며, 본 공사시 외벽은 해당 위치의 외벽마감(수성페인트 등), 바닥은 외부 조경계획에 따라 시공될 예정이오니, 일부 마감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모형, 각종 홍보물 상의 CG 등은 일부 내용이 사업(변경)승인도서와 차이(도어 및 창호의 위치, 열리는 방향, 도어의 종류(여닫이 또는 미서기 등), 크기 등의 변경을 포함함)가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및 인허가 진행상황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연출용 조명을 포함한 연출용 전시품(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사시에는 전시품목은 설치되지 않으며, 해당세대의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 될 예정이오니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기본형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세대 내 타일류,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벽체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규격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제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제품은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부득이할 경우에는 동질 및 동급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타입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CG 및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람(도면, 마감재리스트 등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합니다.)
- 동일한 세대 타입이더라도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에 표현된 평면과 대칭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 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 CG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및 시공과정상 경미한 설계변경이 될 수 있으므로 시공시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제연휀룸 DA,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 설치된 단지모형의 조경계획 및 식재, 시설물, 주민운동시설, D/A, 생활폐기물보관소 자전거보관대, 수경시설, 포장, 주변환경, 부지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 또는 삭제, 추가될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모형상에 생략되어 있는 사항도 있을 수 있고, 외부 조경 바닥마감 색상 및 패턴은 본 시공시 변경되어 시공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온도조절기 등 전기배선관련 제품과 월패드 관련 제품 사양 및 바닥배수구, 점검구, 위생기구, 수전, 악세서리류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생략 또는 표시(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 선홈통과 수전의 위치, 조명기기(등기구) 사양 및 위치, 배선기구(스위치 및 콘센트)의 사양, 수량 및 위치, 온도조절기와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소화기 등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견본주택용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입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 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변경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합니다.
-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에는 보안용 CCTV가 설치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기본 마감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품목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및 제공품목 등은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상의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은 견본주택 오픈 전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일부 내용이 실제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고,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각종 전시상품 및 유상옵션 품목이 포함된 사진이므로 인터넷 홈페이지 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물(견본주택,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과정에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시설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인허가 과정 및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 등 관련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 분양홍보자료,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의 홍보물과 견본주택 내 사인물 및 모형 등에 표현된 계획도로, 공원, 녹지, 종교부지, 보육시설부지 등의 도시계획시설 또는 예정시설 등은 향후 정비계획 변경, 각종 심의, 실시계획인가 등의 인허가 결과, 현장 여건, 설계변경 등으로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의 세부계획(건물의 형태 및 배치, 출입구 및 통행로, 식재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공동주택 입면에는 실제 시공 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Ⅴ 설계관련 주요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반사항
- 실시설계 및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한 검토를 통하여 구조 및 흙막이 설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각종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및 주차장 피트공간은 지반현황, 추가 지반조사 또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등), 단지 내 · 외간 레벨 차에 의해 일부 세대의 전면/후면/측면의 경사면 처리공법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석축, 자연경사처리 구간의 설치여부, 단지내외 연결 보도 및 계단,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연결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른 조망권, 일조권,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의 침해 및 선형이나 공법, 위치 등의 변경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 디자인, 몰딩, 창틀 모양, 줄눈 등), 지하출입구, 외부시설물(난간, 문주, 천창, 드라이에어리어(DA), 조경패턴 등)은 심의 등 인허가 결과, 구조 및 디자인 의도 등에 의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 및 복도와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민 · 형사상 처벌 대상입니다.
- 공동주택 단지 외부의 도로, 공원, 녹지, 종교시설, 보육시설 등은 현재 상황 또는 계획을 보여주는 것(공동주택 시공사의 공사범위가 아님)으로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단지배치/조경
- 보행출입구는 단지 남동 및 남서측에 위치해 있으며, 103동은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공동주택 로비는 보안장치에 의해 출입통제됩니다.)
- 차량 진입구는 단지 동측, 진출구는 서측에 위치해 있고,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과 아동복지시설 이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며, 단지 내부 차량통로는 일방통행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차량 출입구(비상차량동선 포함)와 보행자 출입구로 인한 인접세대의 사생활 및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출입구 높이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 및 사면, 자연석, 계단, 램프의 형태 및 종류, 노출범위,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 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배치도(CG, 모형 등)의 바닥 마감패턴, 칼라 등은 추후 디자인 의도 및 인허가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배치관련 사항들은 (경미한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 ·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견본주에 비치된 모형도, 도면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주동의 배치는 법정거리를 준수하여 계획하였으나, 일부 세대는 일조권이나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침해 및 일조량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 되는 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공간, 생활폐기물보관소, 자전거보관소, D/A, 상가,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물과 건물사이의 보행자 통로, 주변 도로 등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도로 인접 및 주변부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 변경,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내 시설물 등으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도로 측에 면한 세대는 소음에 의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시공되는 마감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세대별로 해당 시설물과의 거리는 차이가 있고 이용이 필요한 시설물의 사용에 불편한 세대가 있을 수 있으니 이와 관련된 사항은 계약시 충분히 확인 및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내 난간은 사용자 안전을 고려하고, 법적 기준 충족을 위해 수직난간으로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폐기물 보관소는 지상(2개소)에 반영될 예정이며, 폐기물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물로 인한 냄새, 분진, 해충 등에 의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를 위한 시설물(D/A)이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부세대는 소음,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배치 및 조경계획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으니,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조경, 동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조경, 세부 식재계획(위치, 규모, 수종 등) 및 조경선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각종 시설물의 규모, 재료, 형태, 색채,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시설물 또는 지상 구조물의 크기 또는 위치 변경에 의해 조경면적 및 식재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식재, 각종 외부조명, 무선AP 및 홈네트워킹 설비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 후 관리규약에 따르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녹지, 도로, 학교, 공원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조성시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에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 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세대는 옥외 보안등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옥외보안등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 단지 내의 식재수종, 비상차량동선 및 산책로 선형,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위치 및 크기, 조경시설물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소방관련 공기안전매트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식재 및 차폐시설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시설물 및 조경수 식재 위치, 마감재료, 형태, 색채는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수경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정기 점검, 수질검사, 소독,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자전거보관소는 지상1층에 반영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소음, 분진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는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외부 휴게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세부 시설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가 사용공간을 제공하고 시설물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CG등의 이미지 자료는 천정고, 입면디자인, 벽체 위치 및 기둥설치 유무 등을 포함한 내부 구성 및 디자인은 인허가 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마감재 및 제공품목, 진출입 동선 계획 등은 인 · 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 시설물은 동선, 성능 개선 및 대관 인허가에 따라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 · 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내, 외부 디자인과 창호사양 및 규격은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에는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내, 외부 디자인과 창호사양 및 규격은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단지 내 공동주택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 단지내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아동복지시설용 실외기가 시설 인근에 설치될 예정으로 인접한 저층 세대에 조망권 침해 및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근린생활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부대시설(근린생활시설 포함)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위치는 동에 인접하여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인접 세대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공동주택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
- 근린생활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주차장은 지상 및 지하1층 일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출입구는 공동주택 차량동선과 공동으로 사용됩니다.
- 공동주택 및 근생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면적 증감, 주차대수 변경 및 위치이동 등을 포함)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주차장은 별도 구획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공동주택과 동일한 차량진출입구를 이용하므로 단지내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되며, 지하층 내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 시공됩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세대별로 주차라인을 지정하여 주차 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주차는 주차장의 위치 및 형태 등에 따라 주차장 이용의 사용성 및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단지내 지하주차장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면적증감, 주차대수변경 및 위치이동 등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 경비실,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차량 진출입구는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으로 이용하며, 보행자 및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과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준공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지하층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 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하주차장 내에 별개의 지하수 배수를 위한 영구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주동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홀, 승강기 인승, 속도, 탑승위치)등은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의 외벽마감은 화강석으로 마감될 예정(계단실 등 코어 외벽, 필로티 내부 및 일부구간 제외될 수 있음)이며 석종, 재료의 색상 및 디자인 등은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동별 석재와 페인트 적용 비율이 상이할 수 있고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및 일부세대는 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 주민공동시설, 주차장 출입구 등이 위치하여 소음피해 및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탑,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높이) 등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고 일부 동 외벽의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에는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캐노피의 형태, 재질, 색채 등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 각 층에 제연실(제연휀룸)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며 지상층에 제연급기용 그릴이 설치 됩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 지붕 및 옥탑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 · 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발전설비, 이동통신용 안테나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세대별 위치 및 조경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이 제한적일 수 있으니 계약 및 입주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라인별로 설치되는 엘리베이터의 대수, 인승, 속도 등은 관계법규가 정한 기준 및 심의조건 등에 맞추어 계획되었으며, 층수 및 사용세대수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의로 조정하지 않아 동별, 라인별로 사용인수 대비 대수 및 인승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복도 및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전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 · 호수 지정 시 동일 평형이나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상의 단위세대와 대칭형(좌우대칭 및 세대현관 출입구 방향이 상이)으로 시공되는 세대가 있으니 계약전 해당 평면 및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타입별 동호수 위치는 분양 카탈로그를 참고) • 단지 내 각종 공용시설(E/V,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사용시 각 동별로 계단실 및 E/V의 위치에 차이가 있어, 사용상의 여건(일부 동의 경우 사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에 차이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 및 주차장 연결통로 등에 주변과의 온도차 등에 의해 결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환기설비 또는 제습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될 예정입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창호의 설치 유무 및 창호크기, 또는 창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창호의 크기 및 형태는 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주동 옥상난간대 및 발코니 난간대의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동출입구 내부의 평면계획(지하층 로비/복도 포함), 기타층 엘리베이터홀과 계단실의 평면 및 창호형태는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공용부의 창호(계단실, E/V홀 등)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TV공청 안테나 및 위성수신 안테나는 전파수신이 양호한 공동주택 지붕(옥상)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단위세대

〈공통〉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입니다. •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입주자의 책임으로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발코니 입면 변화 및 창호 크기 및 위치 등의 차이로 서비스 면적과 채광 및 환기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바닥에 층간소음완충재가 시공될 예정이나,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타입별로 가구형태나 위치가 상이하니 카탈로그 및 미건립평형 CG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내 통합 분전반 위치 및 가구/선반의 배치, 주방 싱크대 수전위치, 현관문 도어의 방향은 주동 조건에 따라 세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관 창고장의 경우 세대 통합 분전반 설치공간 확보를 위해 동 ·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설치 방향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의 내부 구성, 도어의 위치 및 개폐방향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문턱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 외벽 및 세대간벽 등 단열설치부위의 결로 발생으로 인한 하자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및 세대간 벽체 재질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욕실 및 발코니의 바닥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실제 시공시 도면 및 견본주택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세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타입의 경우, 욕실 뒷선반의 깊이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시공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준공인가(임시사용승인 포함)된 시설물에 입주시 이를 임의 변경하여 발생한 하자에 보수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준공시 주택법 관련 '공동주택 소음측정 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도로변 일부 세대에 방음벽 설치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 하시고 계약을 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창호의 문 열림 방향, 날개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및 침실 등의 천정고는 2.3m이며, 실시공시 바닥재의 종류에 따라 법정 허용한도 내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는 인테리어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 옵션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사유와 관련하여 설치완료 후 이동이 불가합니다.
- 실외기실은 외부형으로 거실2 전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시야간섭, 소음,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49 C,D타입 거실1은 인접세대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를 위해 사선으로 계획되었으며, CG 및 도면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49 A타입은 현관창고장이 설치되지 않으며 낮은 신발장이 추가 되며, 주방 장식장이 설치되지 않고 수납이 용이한 키큰장이 설치됩니다.
- 49 A타입의 침실(안방)에 설치되는 붙박이장은 폭이 좁아 선반장 및 인출식 행거가 설치 됩니다. • 49 C,D타입의 침실(안방)에는 붙박이장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마감재〉
- 세대내 설치되는 자재 및 제품(제작품, 마루, 타일 등)는 견본주택과 동일한 제품으로 설치되는 것이 원칙이나, 자재 특성상 또는 제조사 및 제조시기 등의 차이로 인하여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벽걸이TV 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직접 경량벽체에 고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 세대 내 목문, PVC창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공사 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우물천장은 설비 환기배관 및 스프링클러 배관 설치로 인해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천정몰딩은 하자예방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설치되며 견본주택과 디자인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조석의 경우, 재료의 접합 연결부가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할 수 있고,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시공시기의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동등이상의 다른 자재(타사자재포함)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층간소음완충재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내 가구는 각실 Size 및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설치바랍니다. • 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등 가구 상, 하부 및 후면에는 마루, 타일, 벽지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마루자재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습니다.
- 주방 상판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판 크기와 형태에 따라 나누어 제작/설치되는 관계로 본 시공시 연결부위가 발생(세대별로 위치가 다를 수 있음)되며, 제품 특성상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타일, 석재, 바닥재, 가구류, 목창호류, 걸레받이, 벽지 등 자재의 특성상 균등한 색상 및 무늬가 다를 수 있으며, 자재자체의 품질상 하자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 단, 일부 중국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KS기준 시험성적서가 없거나 제품 생산기준이 KS기준과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 타일 나누기(현관, 창고장(일부세대), 욕실, 발코니 등 타일이 시공된 부위)는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창호 디자인(색상 포함), 프레임사이즈,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은 현장여건, 풍동실험 및 안전성에 따라 본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창호 계획에 있어 주거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위치 및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벽 장식물로 인해 발코니 확장 시 침실과 거실의 조망/채광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이중창호, 단열재의 추가설치로 동일 평형이라도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외관과 관련하여 외부 벽체가 내부에서의 시야를 일부 가릴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및 공용부 마감공사, 저층부 특화공사 및 시설물공사, 조경공사 등 시공사에서 진행하는 공사에 대해 타사 마감사례와 비교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타일나누기는 본 공사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타일은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발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타입별 아트월 길이 및 위치, 벽체 마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CG, 카달로그 등 안내문을 확인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적용된 하드웨어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기/설비〉
- 본 공동주택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세탁실에 보일러가 설치되며, 각종 설비배관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보일러 연도의 결로로 인해 낙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동절기 결로낙수와 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스계량기 설치에 따라 세탁실 내 일부공간의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장에 점검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정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유니트에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 근린생활시설의 배관 및 덕트, 가스배관 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세대온수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세대 분전함, 세대 통신함 등이 세대 주방가구 싱크볼 하부, 신발장, 창고장 또는 침실붙박이장의 하부 또는 배면, 침실내 도어 후면 등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주택형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신발장 또는 창고장 내부에 분전함, 통신 단자함 등이 설치될 경우, 이로 인해 신발장 내부 사용면적이 감소하거나 가구내부 구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예정으로,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주방 및 욕실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직배기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인접세대로 인한 악취,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종 수전, 드레인, 선홈통, 보일러 등의 설치 위치, 규격 및 개수는 변경(위치변경, 추가 또는 미설치 등)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실내환기는 기계환기 방식으로 적용되어 거실 천정에 전열교환기가 노출형으로 설치되며, 외부 공기 유입 및 배출용 후렉시블호스 등에 의해 거실 커텐박스 규격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전열교환기의 사양, 제조 및 설치업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도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실내환기는 기계환기방식으로 노출형 전열교환기는 거실에, 디퓨져는 각 침실 천정에 시공되며 작동 중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용 급배기 슬리브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하수처리시설(정화조)의 배기구(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용, 형태 및 크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및 근린생활시설 주방배기 설비가 올라와 냄새 및 분진, 소음 등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설치 위치 및 근본적인 사항,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각종 위생 및 가스배관, 덕트 등은 공용으로 사용되며, 기계실 등에 위치한 기계장비(소방시설 포함)들도 공용장비로 시공됩니다.
- 세대 현관에 스마트 도어카메라 설치로 인하여 동 출입구에 안내표지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탁실 내에 가스보일러가 설치되어, 추후 가스보일러 유지관리시 세탁기를 이동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Ⅵ 기타 주요사항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 분	감리회사명	감리금액(원, VAT 포함)	사업장 소재지
공사 감리(건축, 토목, 설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종합건축사사무소 한목기술단(주)	825,000,000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34-3호

※ 감리회사는 업체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보증에 관한 사항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을 득한 도시형생활주택임]
- 분양보증인 : 주택도시보증공사

(단위 : 원)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85,632,141,000	제01292020-101-005000호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의 정의,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 보증사고의 정의 (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라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 · 파산 ·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를 말합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 · 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약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 보증약관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획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 대여하여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월패드,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분양보증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 · 파산 ·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 · 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공동주택은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함.

구분	동 구분	등급
내진설계 중요도 I	101동 ~ 103동	Ⅶ - 0.2039g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 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진도등급(MMI등급, Ⅰ~Ⅶ)으로 표기

■ 관리형 토지신탁 고지사항
1. 본 사업은 사업기간 중 피분양자의 관리보호 및 안전한 사업진행만을 목적으로 위탁자인 청명종합건설㈜, 수탁자인 ㈜무궁화신탁 그리고 시공사인 자이S&D㈜, 지에스건설㈜ 간에 2020년 02월 18일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근거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청명종합건설㈜ 이며, (주)무궁화신탁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의무를 부담한다.
2. 시행수탁자 ㈜무궁화신탁은 신탁계약에 의거 매도인의 지위를 가지는 자로서, 본 공급계약상 매도인의 책임과 관련하여 시행수탁자는 현존하는 신탁재산 범위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행위탁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본 공급계약에 의한 중도금대출이자 대납의무, 공사 지연을 제외한 사유로 발생하는 입주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의무, 분양광고 · 홍보 등은 시행위탁자 청명종합건설㈜이 부담하고,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입주지연 지체상금, 건축물의 하자보수 의무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사 자이S&D㈜, 지에스건설㈜이 책임 처리하기로 하며, 시행수탁자 ㈜무궁화신탁은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모든 분양수입금은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계좌에 납입되어야 하며, 신탁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수입금이 토지비, 공사비, PF 대출금의 상환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분양대금 반환 재원이 부족할 경우 ㈜무궁화신탁이 신탁부동산을 환가처분하는 것에 매수인이 사전 동의한 것으로 본다.
4.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행정명령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유권이전 절차가 지연될 경우 수분양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5. 분양대금 반환사유 발생시 시행위탁자가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시행수탁자는 신탁계좌 잔액 범위내에서 반환업무에 협조한다. 매수인은 시행수탁자에게 하자보수나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분양대금 반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시행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환가처분하는 것에 매수인이 사전동의한 것으로 본다.
6. 분양계약체결 30일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수인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여야 한다.
7. 입주예정자는 본 재산이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형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신탁계약 해지(일부세대의 소유권이전 포함) 또는 신탁종료와 동시에 공급계약상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분양대금 반환 등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위탁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되며 매수인은 이에 동의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 표시사항
- 등록업자 : ㈜무궁화신탁 • 부동산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 090057(110111-2867418) • 사업방식 : 관리형토지신탁

■ 사업 관계자

구 분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사		분양대행사
상 호	㈜무궁화신탁	청명종합건설㈜	자이S&D㈜	지에스건설㈜	㈜건물과 사람들
주 소	서울 강남 테헤란로 134 포스코P&S타워 22층	서울 동작구 대방동1길 7, 제이타운 2층 1호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10층	서울 종로구 종로 33	서울 서초구 효령로77길 30, 201호
법인등록번호	110111-2867418	110111-5721827	110111-1934557	110111-0002694	110111-1826118

■ 견본주택 위치 :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03-15, 16번지
※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문의 : 1811-9750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 및 인허가 사항이 우선 합니다.

1811-9750

시행 무궁화신탁 MUGUNGHWA TRUST CO., LTD. 주관시공 자이 S&D 위탁 청명종합건설(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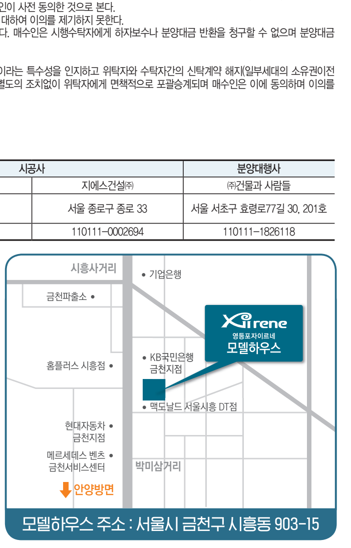

모델하우스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03-15